

[별첨1] 하이트맥주(주)와의 합병계약 요약

1. 합병의 상대방과 목적

(1) 합병당사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진로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
	대표이사	윤종웅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대표이사	박문덕 / 김지현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2) 합병의 목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종합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

2. 합병의 방법 :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 : (주)진로
- 합병 후 소멸회사 : 하이트맥주(주)

3. 합병의 요령

(1)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는 존속회사인 (주)진로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3,0303911주를 배정합니다.
-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 액면금 5,000원인 우선주식 1주에 대하여는 존속회사인 (주)진로의 액면금 5,000원인 우선주식 3,0303911주를 배정합니다.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의 우선주식에 배정하는 존속회사인 (주)진로의 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주식의 종류	의결권없는 기명식 우선주식
우선배당률	액면금액 기준 연 1.0% (단,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가적 성격	보통주식에 대해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우선배당률에 의한 우선적 배당에 추가하여 다시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보통주에 대한 배당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비누적적 성격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아니함.
유·무상증자시 신주배정	존속회사 (주)진로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함.

본건 합병으로 존속회사인 (주)진로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2)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존속회사가 취득합니다.

4.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① 보통주 기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구분	존속회사 (주)진로	소멸회사 하이트맥주(주)
합병가액	36,491원	110,582원
합병비율	1	3.0303911

② 우선주 기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구분	존속회사 (주)진로	소멸회사 하이트맥주(주)
합병가액	15,477원	46,900원
합병비율	1	3.0303911

(2) 산출근거

①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

주권상장법인인 존속회사 (주)진로와 소멸회사 하이트맥주(주)는 그 각각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기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우선주 기준 합병비율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 우선주는 상장되어 있으나 존속회사인 (주)진로가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주)진로의 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바,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의 당사회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할 우선주만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하여는 양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본건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인 하이트맥주(주)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권리의 내용 면에서 기존 하이트맥주(주)의 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존속회사 (주)진로의 우선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것이고, 또 이러한 (주)진로의 우선주가 기존 (주)진로가 이미 발행한 우선주와도 권리의 내용 면에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상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 조건의 우선주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우선주 합병비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에 기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

구분	존속회사 (주)진로		소멸회사 하이트맥주(주)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식매수예정가격	35,164원	15,420원	106,507원	46,730원

- 반대의사 통지 및 매수청구의 자세한 방법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반대의사 표시기간(서면) : 2011년 07월 27일까지

- 주식매수청구기간(서면) : 2011년 07월 29일부터 2011년 08월 17일까지

- 접수장소

구분	장소	비고
(주)진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하이트맥주(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11년 04월 08일)이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2011년 04월 09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6. 임원 구성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재임중인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일 또는 그 이전에 사임하기로 하며, 이로써 그 사임일로부터 각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존속회사의 이사 및/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임원후보자들은 아래 "존속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 기재된 바와 같고, "존속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의 존속회사인 (주)진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합병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존속회사인 (주)진로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뺀기로 하며,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이사 및/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기로 합니다.

상기에 따라 선임된 존속회사의 이사 및/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의 개시일은 상기에 따른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일로 하고,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정한 임기 동안 존속회사의 이사 및/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존속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	임기
사내이사	박문덕	1950.10.22	하이트맥주(주) 대표이사	이사회	특수관계인	없음	3년
사내이사	김인규	1962.11.16	하이트맥주(주) 부사장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사내이사	이남수	1952.09.15	(주)진로 해외사업본부장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사내이사	손봉수	1958.01.07	하이트맥주(주) 강원공장장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사외이사	정병교	1951.10.22	삼진이엔지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	임기
사외이사	유지홍	1953.01.06	(주)서울커넥션 지구촌관광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사외이사 (감사위원)	신중기	1940.02.28	하이트맥주(주) 부사장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사외이사 (감사위원)	김영기	1946.11.20	하이트맥주(주) 고문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사외이사 (감사위원)	양동훈	1947.09.20	하이트맥주(주) 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참고로 소멸회사는 “존속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합병계약서를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하이트맥주(주)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의 안건으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존속회사는 “존속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합병계약서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하이트맥주(주)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의 안건으로 승인 받음과 동시에 별도의 안건으로 구분하여 [이사 선임의 건]의 안건으로 존속회사 주주총회에서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주주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정관을 "존속회사 정관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상기에 의하여 "존속회사 정관변경(안)"과 같이 변경될 존속회사의 정관은 합병계약에 첨부하여 합병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하고, 그 정관변경의 효력은 정관 부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2011년 9월 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존속회사 정관변경(안)]

현 행	개 정	비고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진로라 한다. 영문으로는 <u>JINRO LIMITED</u> 라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u>HITE JINRO CO., LTD.</u> 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류 및 발효식품의 <u>생산·매매업</u> (2) 청량음료, 기호음료, 광천수 및 샘물의 제조, 가공, 판매 (3) 식품의 제조, 가공 <u>매매업</u> (4) 수출입업 (5) 부동산 <u>임대업</u> (6) 농산, 축산 및 임산물의 <u>생산·판매업</u> (7) 유리제품의 <u>생산 및 매매업</u>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류 및 발효식품의 <u>양조·제조·가공·판매업</u> (2) 청량음료, 기호음료, 광천수, 샘물 및 기타 음료의 제조·가공·판매업 (3) 식품, 화학품, 약품 및 매약의 제조·가공·판매업 (4) <u>양조용 원료의 제조·가공·판매업</u> (5) <u>국내외 수출입업, 동 중개 및 대행업</u>	목적사항 수정

현 행	개 정	비고
<p>(8) 화장품의 제조 및 매매업 (9) 창고업 (10)유지제품 제조 및 매매업 (11)전자계산의 개발 및 처리의 기술 용역 (12)주택 건설업 (13)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업 (14)기타사업 및 경영 상담업 (15)운수관련서비스 및 화물중개대리 업 (16)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 (17)식품점포의 설계 및 내장구조의 시공 대행업 (18)주류용 안주류의 개발·제조·판매 (19)주정의 제조 및 판매 (20)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p>	<p>(6) 수출입품의 판매업 (7) 부동산 매매, 임대, 동 중개 및 대 행업 (8) 농·축·수·임산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9) 유리제품의 제조·가공·판매업 (10)화장품의 제조·가공·판매업 (11)창고업 (12)유지제품 제조·가공·판매업 (13)전자계산의 개발 및 처리의 기술 용역업 (14)주택 건설업 (15)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업 (16)기타사업 및 경영 상담업 (17)운수관련서비스 및 화물중개대리 업 (18)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 (19)식품점포의 설계 및 내장구조의 시공 대행업 (20)주류용 안주류의 개발·제조·가공·판매 및 로열티 사업 (21)주정의 제조·가공·판매업 (22)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3)스포츠, 레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4)판매대행 및 마케팅 서비스업 (25)연쇄점의 개발교육, 홍보, 기술지도 및 경영자금의 알선업 (26)조제건강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27)종이 및 판지용기, 플라스틱 성형 포장용기의 제조·가공·판매업 (28)산림보존 및 취수원 보호를 위한 조림사업 (29)제품을 이용한 광고대행 및 제작, 광고수익사업 (30)인터넷 관련 광고대행 및 제작, 광고수익사업 (31)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p>	
제 4 조(공고방법)	제 4 조(공고방법)	공고방법 변경
<p>①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② 전 항의 일간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게재한다.</p>	<p>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tejinr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일보에 게재한다.</p>	

현 행	개 정	비고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산역</u> 주로 한다.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오역</u> 주로 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u>이 경우</u>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나. 당해주식의 권리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 ⑨ (생략)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u>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u>한 주식의 실질가액</u> 나. 당해주식의 권리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u>실질가액</u> ⑥ ~ ⑨ (현행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일부조항 수정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관련 규정 명칭 수정

현 행	개 정	비고
<u>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u>	<u>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일조이천억원을 보통주식으로, 삼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거나, 전액을 보통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관련 규정 수정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일천오백억원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으로, 일천오백억원에 대하여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총액 증액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관련 규정 수정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신설
제 29 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1명</u>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u>4분의 1 이상으로</u> 한다. ② <u>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u> 이내로 한다. 그 중 <u>1명 이상은 상근으로</u> 하여야 한다.	제 29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3명</u>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u>과반수로</u> 한다.	이사총수 및 사외이사 수의 변경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30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u>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u> ② <u>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u>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u>4분의 1 이상의 수</u> 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	제 30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u>4분의 1 이상의 수</u> 로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p>일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③ (생략)</p> <p><u><신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30 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p> <p>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신설
<p>제 31 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p>	<p>제 31 조(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제 32 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p> <p>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제 32 조(이사의 보선)</p> <p>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제 33 조(대표이사등의 선임)</p> <p>① (생략)</p> <p>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p>	<p>제 33 조(대표이사등의 선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p>	임원 관련 회사 자체 반영

현 행	개 정	비고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이사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 관련 회사 직제 반영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35 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삭 제>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36 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삭 제>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3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제 3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변경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p>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39 조(이사회의 의사록)</p> <p>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p>	<p>제 39 조(이사회의 의사록)</p> <p>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신설></p>	<p>제 39 조의 2(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p>제 40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p>제 40 조(이사의 보수와 임원의 퇴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예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p><신설></p>	<p>제 41 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되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신 설>	<p><u>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④ <u>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⑤ <u>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⑥ <u>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u></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신 설>	<p>제 41 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p> <p>① <u>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u></p> <p>② <u>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③ <u>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u></p> <p>④ <u>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u></p> <p>⑤ <u>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u></p> <p>⑥ <u>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u></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신 설>	<p>제 41조의 4(감사록)</p> <p><u>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u></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u>감사위원회</u>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감사위원회</u>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변경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u>감사인선임위원회</u> 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u>최초로</u>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u>그 사실을 보고한다.</u>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u>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u>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u>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u>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u>부 칙</u>	개정정관 시행일 명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신주 우선주 조건 명시
	<p>① 이 정관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는 2011년 7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본 정관개정에 관한 의안을 승인한 결의 시점부터 즉시 시행한다.</p> <p>② 이 정관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우선주주에게 배정하여 발행하는 우선주식</p>	

현 행	개 정	비고
	<p>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의 종류: 의결권 없는 기 명식 우선주식 2. 우선배당률: 액면금액 기준 연 1.0% (단,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배당가능이익 이 있더라도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참가적 성격: 보통주식에 대 해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 는 연 1.0%의 우선배당률에 의한 우선적 배당에 추가하여 다시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보통주에 대한 배당비율과 동 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 다. 4. 비누적적 성격: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 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 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아니한 다. 5. 유·무상증자시 신주배정: 존 속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 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 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 다. 	

8. 기타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1) 합병계약 해제 사유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본 계약은 제13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나.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위 (i)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이 도과되거나 이전이라도 본 계약 제13조 제1항 가.호 및 제2항 가.호 소정의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또는 (i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장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마.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게 매수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가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 본 계약 제13조 제1항 가.호 및 제2항 가.호 소정의 정부승인을 취득하였으나, 그 정부승인에 이를 준수할 경우 존속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건이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그 정부승인에 그 기한 내에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합병계약 해제의 효과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가.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항(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8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9. 존속회사 증권신고서(합병)의 금융위원회 제출시기 : 2011년 07월 06일 (2011년 05월 3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기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및

당사가 신고한 증권신고서(합병)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정관개정(안)

현 행	개 정	비고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진로라 한다. 영문으로는 <u>JINRO LIMITED</u> 라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u>HITE JINRO CO., LTD.</u> 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류 및 발효식품의 <u>생산·매매업</u> (2) 청량음료, 기호음료, 광천수 및 샘물의 제조, 가공, 판매 (3) 식품의 제조, 가공 <u>매매업</u> (4) 수출입업 (5) 부동산 <u>임대업</u> (6) 농산, 축산 및 임산물의 <u>생산·판매업</u> (7) 유리제품의 <u>생산·매매업</u> (8) 화장품의 제조 및 <u>매매업</u> (9) 창고업 (10) 유지제품 제조 및 <u>매매업</u> (11) 전자계산의 개발 및 처리의 기술용역 (12) 주택 건설업 (13) 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업 (14) 기타사업 및 경영 상담업 (15) 운수관련서비스 및 화물중개대리업 (16)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 (17) 식품점포의 설계 및 내장구조의 시공 대행업 (18) 주류용 안주류의 개발·제조·판매 (19) 주정의 제조 및 판매 (2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류 및 발효식품의 <u>양조·제조·가공·판매업</u> (2) 청량음료, 기호음료, 광천수, 샘물 및 기타 음료의 제조·가공·판매업 (3) 식품, 화학품, 약품 및 <u>매약</u> 의 제조·가공·판매업 (4) <u>양조용 원료</u> 의 제조·가공·판매업 (5) <u>국내외</u> 수출입업, 동 중개 및 대행업 (6) <u>수출입품</u> 의 판매업 (7) 부동산 <u>매매, 임대, 동 중개 및 대행업</u> (8) 농·축·수·임산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9) 유리제품의 <u>제조·가공·판매업</u> (10) 화장품의 <u>제조·가공·판매업</u> (11) 창고업 (12) 유지제품 제조·가공·판매업 (13) 전자계산의 개발 및 처리의 기술용역업 (14) 주택 건설업 (15) 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업 (16) 기타사업 및 경영 상담업 (17) 운수관련서비스 및 화물중개대리업 (18)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사업 (19) 식품점포의 설계 및 내장구조의 시공 대행업 (20) 주류용 안주류의 개발·제조·가공·판매 및 <u>로열티 사업</u> (21) 주정의 제조·가공·판매업 (22)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3) 스포츠, 레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4) 판매대행 및 마케팅 서비스업 (25) 연쇄점의 개발교육, 홍보, 기술지도 및 경영자금의 알선업 (26) 조제건강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	목적사항 수정

현 행	개 정	비고
	<p>(27) <u>종이 및 판지용기, 플라스틱 성형 포장용기의 제조·가공·판매업</u></p> <p>(28) <u>산림보존 및 취수원 보호를 위한 조림사업</u></p> <p>(29) <u>제품을 이용한 광고대행 및 제작, 광고수익사업</u></p> <p>(30) <u>인터넷 관련 광고대행 및 제작, 광고수익사업</u></p> <p>(31) 전 각호에 <u>관련된</u> 부대사업 및 투자업</p>	
제 4 조(공고방법)	제 4 조(공고방법)	공고방법 변경
<p>① 이 회사의 공고는 <u>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에</u> 게재한다.</p> <p>② 전 항의 일간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u>중앙일보에</u> 게재한다.</p>	<p>이 회사의 공고는 <u>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u>(http://www.hitejinr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u>한국일보에</u> 게재한다.</p>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사억</u> 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오억</u> 주로 한다.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일부조항 수정
<p>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p>	<p>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p>	

현 행	개 정	비고
<p>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p> <p>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u>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p> <p>나. 당해주식의 권면액</p> <p>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p> <p>⑥ ~ ⑨ (생략)</p>	<p>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p> <p>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u>한 주식의 실질가액</u></p> <p>나. 당해주식의 권면액</p> <p>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u>실질가액</u></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관련 규정 명칭 수정
<p>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u>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u>에 따른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u>에 따른다.</p>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관련 규정 수정
<p>① · ② (생략)</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u>사채의 액면총액 일조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삼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거나, 전액을 보통주식으로</u> 발행할 수 있다.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u>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u> 발행 할 수 있다.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총액 증액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관련 규정 수정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u>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u>사채의 액면총액 일천오백억원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으로, 일천오백억원에 대하여는 우선주식으로</u>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u>하여</u>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u>팔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u>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u>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u>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u>하여</u>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현 행	개 정	비고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신설
제 29 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1</u>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u>4분의 1 이상으로</u>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u>3</u> 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3</u>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u>과반수로</u> 한다.	이사총수 및 사외이사 수의 변경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30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u>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u>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u>관하여</u>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생략)	제 30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신 설>	제 30 조의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u> ② <u>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u>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신설
제 31 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	제 31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p>한다.</p> <p>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p>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2 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 32 조(이사의 보선)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제 33 조(대표이사등의 선임)	제 33 조(대표이사등의 선임)	임원 관련 회사 직제 반영
<p>① (생략)</p> <p>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제 34 조(이사의 직무)	제 34 조(이사의 직무)	임원 관련 회사 직제 반영
<p>① (생략)</p> <p>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감사의 직무)	<삭 제>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p>		

현 행	개 정	비고
<p>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제 36 조(감사의 감사록)</p> <p>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제 3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 3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변경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제 39 조(이사회의 의사록)</p> <p>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p>	<p>제 39 조(이사회의 의사록)</p> <p>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p><신 설></p>	<p>제 39 조의 2(위원회)</p> <p>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p>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비고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40 조(이사의 보수와 임원의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신 설>	제 41 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신 설>	제 41 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p><u>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p> <p>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⑥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p>		
<신 설>	<p>제 41조의 4(감사록)</p> <p>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p>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
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p>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p>	<p>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개정</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변경</p>	

현 행	개 정	비고
<u>그 사실을 보고한다.</u>	<p>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부 칙</p> <p>① 이 정관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는 2011년 7월 28일 주주총회에서 본 정관개정에 관한 의안을 승인한 결의 시점부터 즉시 시행한다.</p> <p>② 이 정관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우선주주에게 배정하여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의 종류: 의결권 없는 기명식 우선주식 우선배당률: 액면금액 기준 연 1.0% (단,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가적 성격: 보통주식에 대해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우선배당률에 의한 우선적 배당에 추가하여 다시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보통주에 대한 배당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비누적적 성격: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유·무상증자시 신주배정: 존속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 	<p>개정정관 시행일 명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신주 우선주 조건 명시</p>

현 행	개 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 다.</u></p>	

[별첨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당사의 안건(하이트맥주(주)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당사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되고 기준일인 2011년 06월 15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11년 04월 08일)이 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2011년 04월 09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본건 안건(하이트맥주(주)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가. 본건 안건(하이트맥주(주)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붙임양식1)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주주총회 전(2011년 07월 27일)까지 당사 재경팀으로, 실질주주(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2011년 07월 25일)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붙임양식2)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종료일(2011년 08월 17일)까지 당사에,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11년 08월 12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주식매수예정가격과 지급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진로의 보통주 주식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35,164원이며, 주진로의 우선주 주식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15,420원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명부주주는 당사 재경팀에서 현금지급 또는 신청한 주주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며,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계좌를 통하여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신청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위와 같이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의 건이 부결되거나,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게 매수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가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합병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일전에 조기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포함) 제출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 소재 주진로 재경팀

- 전화 : (02) 520-3192

- 팩스 : (02) 520-3453

(붙임양식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하이트맥주㈜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함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주식회사 진로 대표이사 귀하

-----절 츠 선-----

(붙임양식 2)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하이트맥주㈜와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주식회사 진로 대표이사 귀하

[별첨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실질주주(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 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단, 제 1 호, 제 2 호 의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행사 가능 주식수를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사송 또는 전신(fax)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2011.7.22) 한국예탁결제원에 도달되도록 직접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증

본인은 2011년 7월 28일 개최하는 (주)진로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1년 7월 일

실질주주 성명 :

(인)

주소 :